

개인(신용)정보 ([] 정정·삭제 []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(제18조제5항 관련)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)

요구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·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정지 조치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·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정지 결정 사유	
이의제기방법	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, 「신용정보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38조, 제38조의3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나라신용정보주식회사 [직인]

유의사항

개인(신용)정보의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'이의제기방법'란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